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방송법 제 87 조 및 제 88 조, 동법 시행령 제 64 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 권한과 직무)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제 3 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한 10 인 이상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실무팀장이 담당한다.

제 4 조(후보자 공모)

1.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 개월 전에 시행한다.
2. 후보자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고지하고 필요할 경우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고지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5 조(후보자 추천)

1.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단체 10 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2. 후보자 공모결과 추천단체 10 개 분야 중 추천이 없는 분야의 단체에는 추천을 직접 의뢰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또한 같다.
3.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1.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2.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② 국가 공무원법 제 2 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③ 정당법에 의한 당원
 - ④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⑤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 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24 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 7 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위원은 주관부서와 편성부서(편성위원회)와 협의 후 최종 선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은 영업본부장, 지원본부장, 준법지원부문장, 전략기획부문장, 경영지원부문장, 커뮤니케이션부문장으로 한다.
4.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10 개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방송사업자는 위원 선정 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 9 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1. 대표이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위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위원이 임기 중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 10 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 년이내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위촉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 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위원은 임기 중 제 6 조 2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사임한다.

제 11 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2 조(위원회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매월 1 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2.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과 제공해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회의 소집 최소 3 일 전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와 부서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6.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7.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의 발언 내용, 방송사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
8.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9.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 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13 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기타)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 본 권고의 내용에 준하여 내규를 제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내규 제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 수 제한, 위원 임기, 연임 제한 등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 또는 전문편성 채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개정안)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